

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. 3. 27 선고 2018가단2150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3. 27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1985. 1. 16. 접수 제43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박규도

별지